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처리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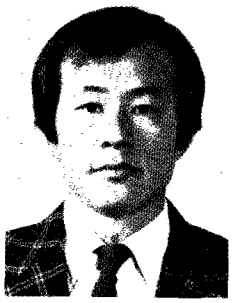

최종용
동부그룹 종합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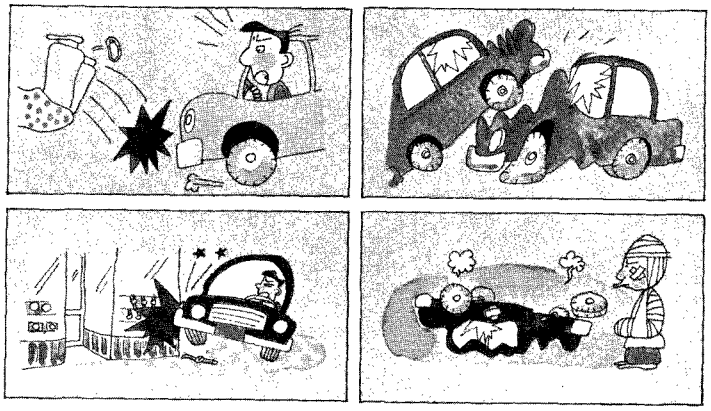

Q 저는 1988년 8월경 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지나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한 후 당황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발생통보도 하지 않고 피해자측 유족과 2,000만원에 합의했읍니다. 이 경우 제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서 합의금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요?

A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피해자측과의 합의시 손해배상금을 2,000만원 지급했을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손해배상금이 1,000만원일 때 보험회사에서는 1,000만원만 지급하게 되어 피보험자가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Q 저는 사용하고 있던 화물차가 낡아 동일용도 및 동일차종의 다른 새 화물차로 바꿨읍니다. 이 경우 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보험계약을 새차로 계속 승계할 수 있는 지요?

A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동일한 용도 및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대체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면 그 받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되어 대체차량이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저는 얼마전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받쳐 8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과실이 50%라는 이야기만 하고 자세한 보상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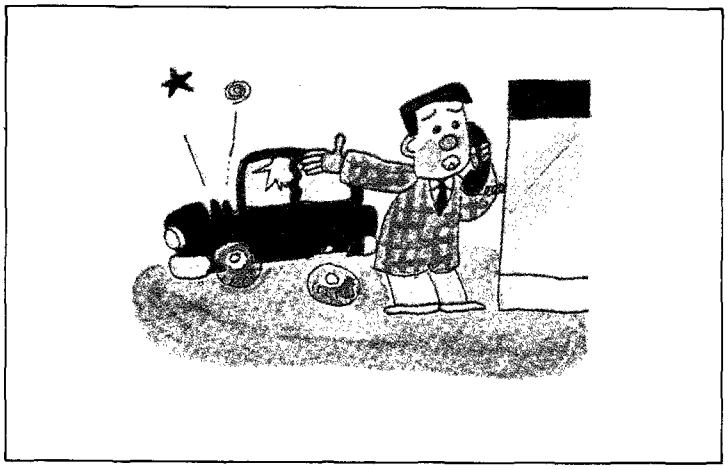

는 없읍니다. 이 경우 혹시 제가 부담할 치료비가 생길 수 있는 지요?

A 현행 종합보험 약관에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해 즉 구조수색비 및 치료관계비(각종 치료비, 성형수술비, 치아보철비, 의안대, 의지대, 안경대, 보청기대, 휠체어)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가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중과실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합의금 보다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상계액이 더 많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읍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합의금산출액이 치료비 과실상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본인이 부담할 치료비는 없읍니다.

Q 저는 '87년 6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부상당한 부위가 완쾌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내용이 없으며, 퇴원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완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가해행위를 한 차량은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A 종합보험 대인배상에 있어서 피해자가 부상당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의 종류에는 부상보험금으로 ① 구조수색비 ② 치료관계비 ③ 위자료 ④ 휴업손해액 ⑤ 기타 손해배상금(간병료 등)과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읍니다. 부상보험금중 휴업손해란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장에 결근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액을 말하며, 장해보험금이란 부상당한 부위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치료를 종결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최종의 상태가 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경우 노동능력상실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치료기간 중의 수입감소액인 휴업손해와 노동능력상실 즉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읍니다.

Q 저는 자동차 구입후 3개월 지나서 자동차 사용시 불편을 덜기 위해 자동차의 용도 및 구조를 일부 변경하였읍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제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지요?

A 피보험자가 소유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후 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 구조변경 등의 사유와 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증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승인을 받기 전에 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중 증가된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 계약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Q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그동안 사고가 없어 30%의 할인을 받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급한 용무로 갱신계약 날자를 넘기고 말았읍니다. 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약3주일 지난 지금, 보험계약시 종전의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지요?

A 자가운전 자동차종합보험은 전 계약기간 동안 무사고일 경우 보험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면 5%를 더 할인, 종전 할인요율인 30%를 합쳐 모두 35%의 요율할인이 되어 기본보험료의 65%요율로 갱신계약을 할 수 있고, 3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 갱신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할인요율만 승계받아 30%가 할인된 70%의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할인요율과는 관계없이 기본요율인 100%로 환원되어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됩니다.

Q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물배상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 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대물배상이란 자동차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직접손해는 사고발생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용과 사고로 인하여 부서진 물건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손해는 자가용 자동차를 파손시켜 수리하는 동안 다른차를 빌리는데 소요된 대차료나 영업용 자동차의 휴차료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이 파손되어 휴업함으로써 입은 영업손실을 말합니다. 대물배상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과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 기타 미술품 등에 생긴 손해와 탑승자나 통행인의 의류 및 소지품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 즉 만년필, 지갑, 시계, 반지 등이며, .대물배상에서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는 통상 쉽게 소지하고 다닐 수 없는 물건, 즉 여행용 가방과 가정용 카셋트, 텔레비젼 등 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안경이나 보청기 또는 의수, 의족 등 신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의 파손은 신체의 일부 즉 치료관계비로 인정하여 대인배상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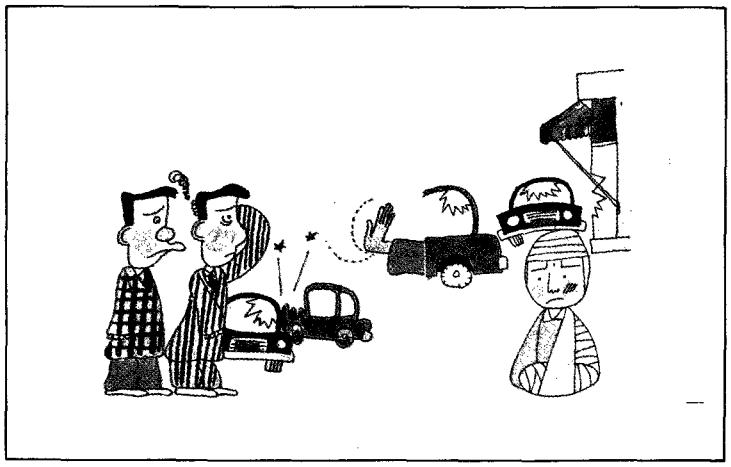

Q 저는 얼마전 시내에서 노상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동안 볼 일을 보는 사이에 제 차에 장치해 두었던 카스테레오를 도난당했읍니다. 이런 경우 차량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A 자동차종합보험중 차량손해 약관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중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자동차 전부의 도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또한 "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종합보험자손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종류에는 ①사망보험금 ②부상보험금 ③휴유장해보험금이 있읍니다. 그중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청약시 가입한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 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손해로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카스테레오는 자동차의 부속기계장치 및 부분품이기 때문에 카스테레오 2만원 도난은 보상받을 수 없읍니다.

Q 저는 얼마전 동네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가다가 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약3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경우 제게도 과실이 있는 지요?

A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는 사람이 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함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약 20~40%의 과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Q 저는 전주에 가족과 함께 놀러갔다 돌아오는 중에 운전부주의로 가로수를 받아 제가족 4명이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이 경우 제가 자동차 종합보험 자손사고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저의 가족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지요?

A 종합보험자손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 종류에는 ① 사망보험금 ② 부상보험금 ③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읍니다. 그중 부상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할 때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청약시 가입한 상해구분 및 급별보험가입 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손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먼저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때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상해급별 금액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실제치료비가 상해급별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한도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저는 지난 1988년 6월 20일 새차를 구입하여 자배책보험을 가입한 후 6월 22일 오후 6시경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읍니다. 그리고 6월 22일 오후 10시경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부상케 하였읍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책임보험으로는 얼마나 보상이 가능한지요?

A 약관상 가입된 보험에 대한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간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6월22일 18:00에 가입한 종합보험은 6월23일 0시부터 보험계약의 책임기간이 개시되므로 6월 23일 0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종합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부상당한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① 구조수색비 ② 치료관계비 ③ 휴업손해 등을 최고 1급 300만원에서 최저14급 10만원에 이르기까지 각 상해등급별 한도액 범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금을 통상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계속〉 영제